
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

<목 차>

1.영상기록장치 설치기준 및 자료보관
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국토교통부	작성 자	이름	김종욱 (안승현)
	담당부서 (과)	대중교통과		직급	사무관 (주무관)
	국장	박무익		연락처	044-201-3832
	과장	김기대		이 메 일	kjunim0729@korea.kr

중 합 교 통 정 책 관 박 무 익 

< 규제 개요 >

기본 정보	1.규제사무명	영상기록장치 설치기준 및 자료보관		
	2.규제조문	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4		
	3.위임법령	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8항		
	4.유형	신설	5.입법예고	'18.12.13~'19.1.21
규제의 필요성	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	범죄 예방 및 사고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장착 등을 의무화 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		
	7.규제내용	전방운행 상황 및 운전조작 상황 관련 영상촬영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등 영상기록장치 설치기준 마련, 또한 영상기록을 3일 이상 보관하고 보관기간 후에도 기록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제공 후 삭제토록 하는 등 보관·제공 기준을 마련		
	8.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	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		
	9.규제목표	영상기록 장착을 의무화 하여 범죄 예방 및 사고원인 규명		
규제의 적정성	10.영 향 평 가 여부	기술영향평가	중기영향평가	경쟁영향평가
	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
기타	11.비용편익 분석 (정성분석)	적용제외(제7호)		
	12.일 몰 설 정 여부	해당없음		
기타	13.원 칙 허 용 · 예 외 금 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	(자동입력)		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(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) ①·② (생략)	제44조(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법 제21조제12항</u>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.	③ <u>법 제21조제13항</u> ----- ----- ----- --.
제46조(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“운수종사자 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.	제46조(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제44조의4</u> 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현황에 관한 정보	1. <u>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45조</u> ----- -----
2. 3. (생략)	2. 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58조의4(<u>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·방법 및 영상기록의 제공·보관 등</u>) ① <u>운송사업자는 법 제27조의3제8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(이하 “영상기록장치”라 한다)를 설치하는 경우 도로변을 포함한 사업용 자동차 전방의 운행 상황 및 운수종사자의 운전조작 상황에 관한 영상이</u>

현 행	개 정 안
	<u>촬영될 수 있는 위치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대체수단을 통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조작 상황이 파악 가능한 경우에는 운전실의 운전조작 상황에 관한 영상이 촬영될 수 있는 위치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 <u>②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가 충격을 받거나 사업용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영상기록장치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</u> <u>③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기록을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 운영·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보관기간(이하 “보관기간”이라 한다)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관기간은 3일 이상의 기간이어야 한다.</u> <u>④ 운송사업자는 보관기간이 지난 영상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관기간 내에 법 제27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기록에 대한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상기록을 제공하기 전까지는 영상기록을 삭제해서는 아니 된다.</u>

I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개정(법률 제15781호 2018.9.18. 공포 2019.9.19. 시행)에 따라 오는 '19.9.19일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, 교통사고 상황 파악,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가 의무화
- 이에 법 제27조의3 제8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의 운영 관리 지침을 마련할 필요
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
- (현행유지안) 규정없음
- (규제대안1) 자동차 전방 및 운전조작상황등이 촬영될수 있는 위치, 충격 및 화재에 보호될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, 3일이상 보관 및 삭제, 요청시 삭제금지 등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이해관계자명	주요 내용	조치결과
운송사업자	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예정('18.12~'19.1)	

3. 규제목표

- 전방운행 및 운전조작상황 등 필요한 영상자료를 확보하고, 최대한 보호하고 관리하여 범죄예방 및 사고를 파악하려는 입법 목적 달성

II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- 사고원인 규명등 명확한 사고파악을 위해서는 도로변을 포함한 자동차 전방의 운행상황 및 운수종사자의 운전조작상황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
- 또한 기기의 저장용량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관기간은 3일이상이 적절하며, 법 제27조의3제4항에 해당하여 요청을 받는 경우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삭제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영향평가			시장유인적 규제설계	일몰설정 여부	원칙허용· 예외금지
기술	경쟁	중기			
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

o 영향평가

- 기술규제영향평가

해당없음

- 경쟁영향평가

해당없음

- 중기영향평가

해당없음

o 기타 고려사항

- 시장유인적 규제설계

해당없음

- 국제 기준 정합성

해당없음

- **일몰설정 여부**

상위법에 대한 구체화 내용을 일몰 불필요

- **원칙허용·예외금지 규제방식(네거티브 규제)적용 여부**

해당없음

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○ 해외사례

<영국>

런던의 시내버스는 스피드 돔 카메라를 내부 감시용으로 전면과 중간 그리고 후면에 3대, 전면과 후면 주시용 2대 그리고 측면 감시용 2대를 포함해 총 7대를 장착하여 운영 중이며 이층 버스의 경우 2층 내부 감시용 2대를 더 포함해 총 9대의 카메라를 장착해 운영.

<스웨덴>

당초 정부기관이나 군부대 등 특수시설 위주로만 설치됐던 보안감시시스템(CCTV)이 1998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친 법 개정 이후 학교, 법정,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, 은행, 주차장, ATM, 일반 매장으로까지 설치 확대

○ 타법사례

영상기록 설치의무등과 관련하여 「철도안전법」 및 「도시철도법」에 동일·유사내용 규정

Ⅲ. 규제의 실효성

1. 규제의 순응도

○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현재 대부분의 노선버스에는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, 버스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버스 내 영상기록이 이용객과 갈등해결에 용이하며, 교통사고 발생 후 사고 수습 시에 사업자들도 영상기록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으로,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이 높음

○ 규제 차등화 방안

해당없음

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○ 행정적 집행가능성

여객법령에 따라 자동차 정비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며, 현재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상·하반기마다 청결상태등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병행하여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 상태 확인 가능

○ 재정적 집행가능성

현재 대부분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, 영상기록장치를 설치비용 보다 설치·관리로 인하여 운송사업자가 범죄예방 및 민원해결, 교통사고 수습등 운영관리상 편익이 크므로 스스로 설치하여 특별한 비용 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

IV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1. 추진 경과

범죄 예방 및 사고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장착 등을 의무화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,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개정내용의 구체화를 위임

2. 향후 평가계획

민원해결 및 범죄예방, 사고파악을 위한 영상기록 활용실적 확인 및 주기적으로 설치 및 관리상태 확인

3. 종합결론

범죄 예방 및 사고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장착 등을 의무화하도록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및 보관방
법을 구체화한 것으로,

영상기록장치를 설치 및 관리하는 사업자 부담보다 범죄예방 및 민
원해결, 사고수습 등 사업관리를 위한 편익이 크다고 판단되어 해
당 규제 신설을 타당

별첨
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
가. 대안별 분석 비교표

분석기준년도	규제시행년도	분석대상기간 (년)	할인율(%)	단위
				백만원, 현재가치
규제대안1 :				
영향집단		비용	편익	순비용
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	직접			
	간접			
피규제 일반국민				
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	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				
정부				
총 합계				
기업순비용			연간균등순비용	

나.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·편익 분석 결과

<규제대안1 : >

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:

☐ 직접비용

(정성)세분류	운송사업자
활동제목	영상기록장치 구입 및 설치
비용항목	설비
일시적/반복적	
분석	
근거설명	

(정성)세분류	운송사업자
활동제목	영상기록장치 기록관리
비용항목	행정부담
일시적/반복적	
분석	
근거설명	

☐ 직접편익

(정성)세분류	여객운송사업자
활동제목	범죄예방 및 사고파악
편익항목	시장 안정성 제고
일시적/반복적	
분석	
근거설명	

(정성)세분류	여객운송사업자
활동제목	버스사업 매출 증가
편익항목	영업이익
일시적/반복적	
분석	
근거설명	

(정성)세분류	버스이용객
활동제목	안전한 버스 서비스 이용
편익항목	안전사고예방
일시적/반복적	
분석	
근거설명	

붙임	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(영상기록장치 설치기준 및 자료보관)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① 규제 영역	운영관리
② 규제 방식	기준규제
③ 예비분석모델	정성모델
	판단근거
	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, 여객이 6세미만인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도 포함하도록 여객법 개정('17.10.24) 되었으며, 안전을 위해 시설여건을 갖추도록 규제한 것으로 그 성질이 유사
④ 대상 업종	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
⑤ 예비분석내용	① 규제 대상 집단의 특성 파악 - 전국에 약 4천여개의 버스운송사업자, 약 16만개의 택시운송사업자(개인 택시사업자 포함)가 있으며 운송사업 종류별로 개인사업자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하게 분포 ② 유사사례 분석 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, 여객이 6세미만인 유아의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운송사업자가 안전을 위해 시설여건을 갖추도록 한 사항으로 해당규제와 유사 ④ 차등화 대상 결정 - 이미 대다수의 노선버스에서는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,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의무화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사업자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 차등화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
⑥ 차등화 적용 여부	안전에 관한 규제로, 유사사례를 고려하였을 때 차등화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